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1일, 김병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병주 의원)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개정안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본인의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법령상 대체복무요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청원휴가 제도를 활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청원휴가의 연간 사용일수 상한인 60일을 초과하는 병원 입원 진료가 요하는 질병·부상의 경우 입원 치료가 불가한 실정임.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의 경우 일정 기간(통틀어 2년내) 복무를 중단하고 질병·부상 치료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유도하고,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분할복무의 승인권자를 ‘복무기관의 장’이 아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 분할복무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에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의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질병·부상 치료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분할복무의 승인권자를 ‘복무기관의 장’이 아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조사를 삭제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음

[붙임]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분할복무의 승인권자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수정함(안 제 22조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의2제1항 중 “대체복무기관”을 “소관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체복무기관”을 “소관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u>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u>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u>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u>소관중앙행정기관-----</u> <u>-----</u> <u>-----</u> <u>-----</u> . ② ----- <u>-----</u> <u>-----</u> <u>-----</u> . ----- <u>소관중앙행정기관---</u> <u>-----</u> <u>-----</u> <u>-----</u> <u>-----</u> <u>-----</u> .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 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 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u> <u>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